

청 약 철회 신 청 서

BNK 투자증권

■ 고객 정보

계좌번호		계좌명	
생년월일 / 사업자등록번호		전화번호	
주 소			

■ 청약 철회 대상

- **(투자성 상품)**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**7일 이내** 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**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**
 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등을 **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**
- **(대출성 상품)**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**14일 이내** 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**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**
 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, **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**

청약철회 대상상품	☐ 투자성 상품 : 세부사항 기재 가능 ☐ 대출성 상품 : 세부사항 기재 가능		
1) 계약서류 제공 받은 날	년 월 일	2) 계약서 체결일 (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)	년 월 일

■ 고객 확인사항

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“확인함”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[대출성 상품] 대출계약 철회 신청시,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의 전액 상황이 완료되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	확인함
※ [대출성 상품] 철회의 의사표시 도달 전 담보대상 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	확인함
※ [투자성 상품] 예탁한 금전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습니다.	확인함

※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
※ 고객이 청약철회의 서면을 우편, 팩스로 발송한 경우 그 사실을 전화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(전자우편 제외)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조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